수해지역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지침(안)

1 검토배경

□ 역대 최장 장마기간 중 기록적 폭우로 전국적 피해 심각

○ 이재민 7천여명, 주택 5천 9백여채 및 여의도 면적 94배에 달하는 2만 7천 헥타르 농경지 피해 등 대규모 인적·물적 피해 발생(8.11.기준)

□ 공공조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수해 피해 복구 지원

○ **긴급수요물자의 신속·적기 공급체계 구축**, 수해 피해 **조달기업 지원** 등을 통해 **정부·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적극 뒷받침**

2 긴급조달지침(안)

❶ 조달절차 완화를 통한 긴급수요물자 신속 공급

○ **(긴급입찰·수의계약제도 활용)** 수해복구·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**원칙적으로 긴급입찰*이나 수의계약으로 집행**하여, 입찰 소요기간 단축

* (일반입찰) 사업규모에 따라 7~40일 이상 공고 → (긴급입찰) 5일간 공고

○ **(MAS 2단계경쟁 예외 인정)** 복구·구호물자에 대해서는 **수요기관에서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신속 구매가 가능**하도록 지원

○ **(방역물품 납품검사 면제)** 장마 후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**방역 관련 물품[1]**에 대해서는 **납품검사 한시 면제[2]**

1」 마스크, 방역용소독기, 손소독기, 살충제, 살균제 등

2」 통상 1~2주 소요 납품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

❷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

○ **(계약부담 완화)** 수해로 **납품 지연 또는 불가능시 제재 감면**

- **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**에 대해서는 **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**하고, 필요시 **납품기한 연장**

- 피해가 심해 **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**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 불이행에 따른 **계약보증금 환수,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 조치 면제**

○ **(유동성 지원) 피해 기업**에 대해 ①네트워크론* 우대금리 적용 및 심사 기간 최소화 요청(10개 시중은행), ②선금 요청시 지급기간 단축(자체 시행)

* 현재 10개 은행과 협약 체결 중 / '19년 실적 : 14,312건, 4,748억원

3 행정사항

□ **지침시행** : '20.8.13.(목)부터 2개월간 한시 시행

□ **관련 부서 협조사항**

○ **(구매·신기술·시설) 긴급지침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 안내**(홈페이지, 문서 등)

- MAS 2단계경쟁 예외 및 방역물품 검사면제 등 이용절차 공지

- 네트워크론 관련 10개 시중은행에 협조문서 발송

- 복구·구호물자 공급 조달업체에 피해 지역 우선·적기 공급 협조 요청

○ **(지방청)** 복구·구호물자 **피해 현장 공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** 등

-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공급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등

- 지자체 등 관할 수요기관에 긴급조달지침 내용 적극 홍보